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행 정 재 경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714호
- 나. 제 출 자 : 고성미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5. 5. 29.
- 라. 회부일자 : 2025. 5. 29.

2. 제안이유

공유촉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고, 공유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공유 촉진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금천구 공유사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공유를 통한 경제·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의2)
- 나. 폐지된 조례 삭제 및 현행 조례 반영(안 제5조제5항)
- 다. 공유촉진위원회를 비상설 체제로 전환(안 제6조 및 안 제8조)
- 라.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에 따른 표기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 등)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공유촉진위원회의 의결권을 추가하여 공유 촉진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5조의2에서는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 안 제6조에서는 기존의 자문 기능에 더해 공유촉진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
 - 안 제8조에서는 공유촉진위원회를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금천구는 2016년 ‘서울시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공동협력사업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고,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에는 참여 및 관심 저조와 활용도 감소로 사업 전반이 침체되고 있음.
- 공유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침체된 운영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수요 기반형 콘텐츠 개발, 참여 유도 인센티브 마련, 민간과의 협력 확대 등의 다각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관련내용 서울시 자치구 조례 비교 현황 1부. 끝.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연번	자치구명	우수공유자에 대한 지원	공유촉진위원회 비상설 운영	공유촉진위원회 의결권
1	서울시	○	×	×
2	금천구	없음	상설	심의·자문
3	종로구	○	×	×
4	중구	×	×	×
5	용산구	×	×	×
6	성동구	×	×	×
7	광진구	○	○	○
8	동대문구	×	×	○
9	중랑구	×	○	×
10	성북구	○	×	×
11	강북구	×	×	×
12	도봉구	○	×	×
13	노원구	○	×	×
14	은평구	×	×	×
15	서대문구	×	×	×
16	마포구	×	×	×
17	양천구	×	○	×
18	강서구	×	×	×
19	구로구	×	×	×
20	영등포구	○	×	×
21	동작구	×	×	×
22	관악구	×	×	×
23	서초구	×	×	×
24	강남구	공유촉진조례 없음		
25	송파구	×	×	×
26	강동구	○	×	×